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 06.23)

1. 건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96세대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96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193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23)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6.6.24 이후 혼인)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6세 이하의 자녀(2016.6.24 이후 출생)를 둔 사람(태아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2016.6.24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3.7.4(화)~7.6(목)	'23.7.14(금)	'23.7.17(월) ~ 7.21(금)	소명대상 개별통보	'23.10.20(금)	'23.11.1(수) ~ 11.3(금)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55A/55AS*	55.65	23.4468	9.1230	37.9383	126.1581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4.11** (예정)
55B	55.94	23.5690	9.1706	38.1360	126.8156		
55C	55.82	23.5184	9.1508	38.0542	126.5434		

*** A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입니다.**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우선 공급 (47)	일반 공급 (49)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55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9	29	108,000	5,400	102,600	450,000	(+) 54,000	162,000	180,000	6~10
55AS (주거약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	4					(-) 92,000	16,000	641,660	
55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2	13	108,400	5,420	102,980	451,660	(+) 54,000	162,400	181,660	
55C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	3					(-) 92,000	16,400	643,320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4년 11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96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193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5A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공고문「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11.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현관창고 / 침실2-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며,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전세대는 디지털도어락, 전동빨래건조대, 가스쿡탑(3구형), 펜트리(시스템선반제외),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핸드터치식), 욕조(공용욕실), 비데(부부욕실 1개),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세대 내 중복신청)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①-㉮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6.6.23 이후 혼인)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의 자녀(2016.6.24 이후 출생)를 둔 사람(태아포함)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2016.6.24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 신혼부부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2인	5,505,914원 이하	110%	6,506,989 원 이하	13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8,061,838 원 이하	12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9,146,467 원 이하	12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9,648,590 원 이하	12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10,441,967 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맞벌이 **793,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23)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 (신청자 본인 기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	**부천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하단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3000293**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23)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란?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대상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23)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배점**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3. 7.4(화) 10:00 **~ 7.6(목)** 18:00 **인터넷(PC,모바일) 접수** ※ 인터넷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 **7. 6(목)** 10:00~16:00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23. 7.14(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23. 7.17(월)** **~ 7.21(금)**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부 부천괴안 B-1블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3.7.21**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23. 10. 20(금)** 17:00 이후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 ARS(1661-7700)	**'23. 11. 1(수)** 10:00 **~ 11.3(금)** 17:00 **전자계약**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공고문 5.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3.7.21(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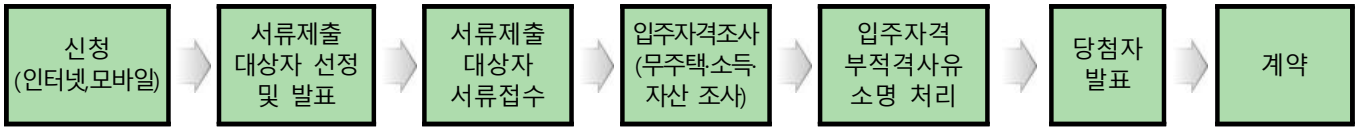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청약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입장불가) 및 체온 측정(37.5℃ 이상 입장불가), 손소독제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기 간	**2023. 7. 6(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장 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대중 교통편	- **열차** :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도보 2분거리) - **버스** :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1, 116-3, 300, 37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약 도	 *주차 가능합니다
구 비 서 류	☐ **아래 서류와 [5.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사람이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지구 선택	주택형 선택	신청유형 선택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서약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부천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천시 거주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3.7.4(화) 10:00 ~ 7.6(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저장기준)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023.7.14(금) 17:00 ~)**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센터(apply..or.k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 상단 드롭다운메뉴에서『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 **2023.7.17(월) ~ 7.21(금)**
 - 제출 서류: 공고문**(5. 신청서류) 및 LH 청약센터 게시 서류제출안내문** 참고하여 제출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3.7.21(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봉투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ex. 홍길동/000000/55A)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부 부천괴안 B-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6. 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서류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필수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등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1-1 공사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 1통 (별지 1-2,1-4 공사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별지1-3 공사서식)
해당자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계층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맞벌이로 신청 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자·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계층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제출(별지2-1, 2-2 공사서식)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도 발급 가능)**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맞벌이로 신청 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자·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별도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 해지 처리됨	공사서식 행정복지센터
전체계층 중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하여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의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 10. 20(금)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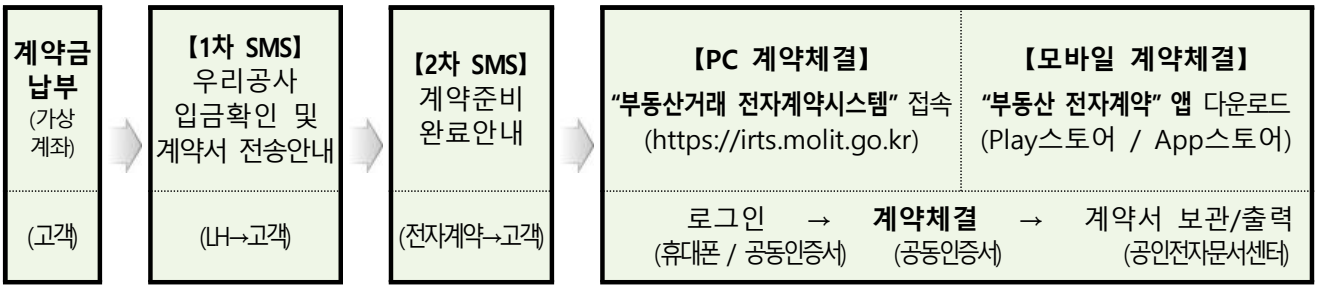
○ **전자계약** [기간 : 2023. 11. 1(수) 10:00 ~ 2023. 11. 3(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able>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td></tr>
</table>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 **<u>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u>**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3년의 경우 3,68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 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지구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44호)로 승인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부천괴안 B1BL)'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조건이행지자체의견, 상위계획 반영,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구에서 직선거리(부천괴안 B-1BL 단지입구 기준) 1km이내에 지하철 1호선 역곡역, 직선거리 2km이내에 지하철 7호 온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부천괴안 B-1BL 단지입구 기준 1km이내에 서울푸른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밖 주변에 부광로, 양지로 6차선 도로가 운영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에 B-2BL, A-1BL이 위치하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에 근린공원1이 있으며, 지구 밖에 주유소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지구 내에 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 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구의 개발사업은 사업진행 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블록은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양지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가 있으며,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기간이 2024년 3월로 계획되어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로 본 단지와 인접한 도로 및 보도는 공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의 근린공원1은 원형이 보전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공원 입구, 공원로 등 세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본 단지는 당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착공되는 단지로, 지구내외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모집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혼합단지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행복)별 구분 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은 단지 외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역, 피난 구역 확보를 위하여 각 동 전면, 후면 일부 구간은 조경 등 식재가 생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및 입주자 의견에 따라 외부에 위탁운영시설(국공립어린이집 등)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수요가 많을 경우 기존 어린이집 외에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관련) 2세대가 1대 사용하는 라인 : 101동 1호 2호 및 3호 4호라인, 102동 4호 5호라인 엘리베이터 / 3세대가 1대 사용하는 라인 : 102동 1호 2호 3호라인, 103동 및 104동 전체 3세대 1대 엘리베이터 사용(자세한 사항은 단지배치도 참조)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경면적 등의 단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B1BL과 B2BL 사이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안전난간(높이 1.2m)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미확정 상태로 팜플렛의 단지조감도와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공용시설물, 도로계획 등 공용부분은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347대이며, 7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별도로 2대(장애인 주차장 1대 포함)가 지상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민원에 의한 증설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으며,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대(101동 및 104동에 1개소, 102동 및 103동에 1개소가 설치)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 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트랜치는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트랜치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에 의해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예정입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써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됩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뿜칠로 시공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제공되는 시설물(어린이집-신발장,주방가구, 종합보육센터-바테이블,작업대, 쇼파벤치,정수기장,수납장,책장,데스크,잡지꽂이, 피트니스센터-신발장,데스크,락카장) 외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우수 및 결로수 등 배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따라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변압기 및 PAD 스위치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됩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특정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는 동 옥상에, 중계기는 지하 PIT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단,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일부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각 세대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을 통해 온수공급 및 난방이 이루어지는 개별난방입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지하2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단,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문주 디자인은 미확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부천괴안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구 내 위치된 하천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 시까지 수로 정비 등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로 정비 등 공사 이후에도 사업지구 외부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부천범박1단지 부광로측으로 방음벽이 설치되며 일부 동 시야가 방음벽에 의해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이며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천괴안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 일부라인 저층부는 동출입구 및 세대비움(조경설계, 쉼터 등)으로 계획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동선, 시선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종합보육센터,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와 인접한 동 저층부 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조) • 단지 내 환기탑(D·A)이 배치되어 소음 및 열풍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고)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 발전기 배기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동에서는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발전기실 / 전기실, 102동 뒤쪽에 위치)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1층 지하주차장의 차로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단지 주출입구에서 바로 진입하는 지하2층 지하주차장의 차로높이는 2.7m로 계획되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 발코니 샤시의 개폐방향은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 구조물과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수거함이 일부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며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생활자원보관소가 일부 동(101동) 지하2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색상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라, 아파트 저층부에는 미관상의 저해,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기계실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경우 타 세대에 대비하여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거실 및 각 침실에는 난방용 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상하부장 후면에는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고 신발장 후면에는 벽도배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벽/바닥타일 등은 실제 시공 및 생산과정에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스테이플 건(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트레이, 덕트,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됩니다 (기계,소방,전기, 통신분야) • 세대내 천장에 설치되는 실내환기장치(기계환기방식)는 전열교환기 시스템이 적용 되며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휀(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있어 환기휀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므로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열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 등의 편의시설 신청 시기에 따라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환경성선언(EDP)의 사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체계적인 현장관리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계획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로 해당 등급 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괴안 B-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요진건설산업(주) 우람종합건설(주) 장흥종합건설(주) ㈜대영전기 신명엔지니어링(주) 우성기업(주)	없음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DA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상우종합건축사사무소

11.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설치 시설**(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밖여닫이), 안전손잡이(현관, 샤워실,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바닥미끄럼방지, 바닥단차 제거,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침실), 동체감지기, 높낮이조절 샤워기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계약자가 신청 시 설치)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욕 실	바닥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cm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 손잡이 설치(L자형, -자형 각1개)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수건걸이 높이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 높이(1~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1.2m내외)	
	좌식 싱크대(휠체어 및 의자사용 가능토록 설치)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1.2m내외)	
	야간센서등(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23. 11. 1(수) ~ 11. 3(금)] 등기우편으로 송부**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별지3)**는 본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3.11.3(금)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부천괴안 B-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인터넷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신청접수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